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2.7.19.(화)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
상담 내용	제주테크노파크의 직원 공개채용에 따른 직무면접위원으로 우리 공사 시설관리팀장이 위촉되어, 해당 면접전형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위 1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상담 내용의 면접위원 심사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p>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掌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2022년 7월 19일

행동강령책임관

강 종 훈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2.8.10.(수)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메신저)
------	---------------	------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

상담 내용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수와 교직원의 범위 문의

-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의거 같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 ‘강사’의 경우 2019. 8. 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

06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고등교육법」 상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조)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 8. 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 학교 교원, 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2022년 8월 10일

행동강령책임관

강 종 훈


명보인